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30.(수)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5. 27. 안향자 의원 외 21명 발의 (의안번호 354호)
- 나. 회부일자: 2021. 5. 2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6. 8.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향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교육시설의 설치·강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보고 및 감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필요한 교육 시행과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바,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3. (생략)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2021. 4월 현재 성북구의 전체 등록 장애인수는 1만 7천 4백여명으로 이 중 11%인 1천 9백 30명이 시각장애인 임.

〈2021.4월 기준 성북구 장애인등록 현황〉

(단위: 명)

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	언어	기타
17,475	1,107	227	7,789	1,780	1,930	2,559	794	655	168	466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시각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교육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시각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 근거와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시각장애인 교육대상자 선정기준과 협력체계 구축, 보고 및 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